

直接 保險者에게 손해보상을 要求할 수 있게 되어 消滅時效期間도 추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責任保險者가 먼저 共同免責을 이행하고 求償해 올 경우 사고시부터 공동면책시까지의 其間이 더욱 추가하여 延長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現行 商法上 責任保險者는 被害者의 直接 請求權에 의하여 그 責任範圍가 확장되었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의 責任保險者의 책임범위는 判例에 의하여 더욱 增加하게 되었으며, 責任保險 關係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가 최 우선시되어야 함은 법리적인 타당성의 담보 문제가 아닌 政策的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被害者의 保護에도 충실하면서 責任保險者의 責任增大에 對應한 求償權 行사가 公平타당한 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責任보험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운용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판례상으로부터 認定되는 공동불법행위자 相互間의 求償權 制限 法理에 대응가능한 方案으로 '입법적용에 따른 실현방안'과 '민법상 辨濟者 代位에 따른 실현방안'에 의한 求償權 實現 方案을 研究하였다.

4. 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김진석
지도교수 정영석

본 연구는 현행 선원재해보상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육상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보다 매우 열악하다는데 관점을 두고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보험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선원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선원법, ILO협약에서 정하는 선원재해보상제도 등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제도를 종류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상의 재해보상내용을 살펴보았다.

선원의 경우 해상근로의 특수성 때문에 육상근로자와는 차별된 재해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 문제라든지, 행방불명보상, 소지품유실보상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육상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은 육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달에 비해 낙후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무보험선박에 승무중인 선원의 재해보상문제이다.

우리 선원법은 선원의 재해보상책임을 선주에게 지우고 있긴 하나, 선주는 재해보상을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으로 카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선주의 보험료 납입지체 등 보험금지급 면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원보상도 어선원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과 같이 가입대상인 경우 우선 재해보상을 행하고 사후에 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정책보험화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보험금의 직접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책임보험인 경우에 재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는 선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해를 당한 선원이 선주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급여 또는 일정등급 이상의 장해보상일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이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해보상금을 모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원에 대해서도 재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5. 해상운송 및 관련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김 남 수
지도교수 정 영 석

海上運送과 海上保險은 相互 表裏關係에 있으므로 海上運送을 모르고 海上保險만을 안다는 것은 海上保險을 모르고 海上運送만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쪽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운송인 및 해상운송 관련 사업자의 배상책임과 그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海上運送 및 海上運送 關聯 事業者와 海上保險者는 一定한 保險料를 支拂하고 一定한 方法으로 保險보상을 하는 保險契約關係에 있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海上運送 및 關聯 事業者의 賠償責任에 따라 保險者와 海上運送 및 關聯 事業者는 求償關係에 있게 된다. 따라서 海上運送 및 關聯 事業者와 海上保險者는 相互 補充關係에 있게 된다.

保險制度에서의 保險關係 및 求償關係는, 예를 들면 海上積荷保險者인 保險者와 積荷保險